영주시 공고 제2023 - 540호

「영주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영 주 시 장 

영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생활폐기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나. 생활폐기물 처리 중 **로드킬 동물사체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의3)**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경북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470)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연락전화 : (054)639-6773
E-mail : smjm27@korea.kr, FAX : (054)639-6759

영주시 조례 제 호

영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경우
4.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5. 기계적 수거장치 부착차량(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집흡입차량, 집게차량 등)으로 작업하는 경우
6.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의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차량이동량이 많은 지역에서 폐기물 수거, 가로청소 등으로 청소종사원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의3(로드킬 동물사체처리)시장은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경우 4.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5. 기계적 수거장치 부착차량(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집흡입차량, 집게차량 등)으로 작업하는 경우 6.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의 폐기물의 종류, 작업 환경,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차량이동량이 많은 지역에서 폐기물 수거, 가로청소 등으로 청소종사원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제7조의3(로드킬 동물사체처리) 시장은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